

부속서 I
기존의 조치에 대한 유보

캐나다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캐나다의 유보목록은 제8.9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캐나다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8.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9.2조(내국민대우)
- 나. 제8.4조(최혜국대우) 또는 제9.3조(최혜국대우)
- 다. 제8.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라. 제8.8조(이행요건)
- 마. 제9.4조(시장접근), 또는
- 바. 제9.5조(현지주재)

2.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보된 특정분야를 지칭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된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마. **조치¹**는, 표시된 곳에서 **유보내용** 요소에 의해 한정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8.9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한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3. 유보를 해석함에 있어, 산업분류를 제외한 그 유보사항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는 유보가 취하여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8.9조제1항가호 및 제9.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9조제1항다호 및 제9.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의 **유보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캐나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9.2조(내국민 대우), 제9.3조(최혜국 대우), 제9.4조(시장접근) 또는 제9.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는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8.3조(내국민 대우), 제8.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8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국민 대우(제9.2조)와 현지주재(제9.5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9.5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9.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7. 이 부속서의 목적상,

CPC는 1991년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제77호 임시중양품목분류에 규정된 중양품목분류(CPC) 번호를 말한다. 그리고

SIC는 1980년 캐나다 통계청 표준 산업 분류 제4판에 규정된 표준산업분류 번호를 말한다.

부속서 I
캐나다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이행요건 (제 8.8 조)
조치	캐나다 투자법, R.S.C. 1985, c. 28 (1st Supp.) 유보내용 요소 제 8 항부터 제 12 항까지에 의해 한정되는 캐나다 투자규정, SOR/85-611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인이 아닌 자가 다음과 같은 캐나다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투자감독관의 검토를 조건으로 한다. 가. 자산이 5 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캐나다 회사의 직접 인수 나. 자산이 5 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캐나다 회사의 간접인수, 그리고 다. 5 백만 캐나다 달러에서 5 천만 캐나다 달러 사이의 자산을 가지고, 이러한 자산이 해당 거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권이 인수되는 모든 실체들의 자산 가치의 50 퍼센트 초과에 해당되는, 캐나다 회사의 간접 인수 2. 이 유보의 목적상, “비캐나다인”은 캐나다인이 아닌 개인, 정부 또는 그의 기관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캐나다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캐나다 내의 정부 또는 그의 기관, 또는 「캐나다 투자법」에 명시된 캐나다인이 지배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3. 이에 더하여, 통상적으로는 신고해야 하는, 캐나다 문화유산이나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정된 종류의 사업활동을 하는 신규회사의 구체적인 인수나 설립은, 총독이 공익을 위하여 검토를 승인하는 경우, 검토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검토 대상인 투자는, 「캐나다 투자법」을 담당하는 장관이 투자가 캐나다에 게 순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될 수 없다. 이 결정은 다음에 요약된 대로 그 법에 명시된 6개 요소에 따라 이루어 진다.

가. 고용,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부속품·서비스의 사용, 캐나다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효과를 포함하여, 캐나다 내 경제활동의 수준과 성격에 대한 투자의 효과

나. 투자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참여 정도와 중요성

다. 캐나다에서의 생산성, 산업효율, 기술개발 및 제품혁신에 대한 투자의 효과

라. 캐나다 내 산업 또는 산업들 내에서의 경쟁에 대한 투자의 효과

마. 투자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주의 정부나 입법기관이 밝힌 산업, 경제 및 문화적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투자와 산업, 경제 및 문화적 국가정책과의 양립가능성, 그리고

바. 투자의 국제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력에 대한 기여

5. 순익 결정을 내릴 때, 장관은, 제안된 인수가 캐나다에 순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신청인이 설명한 계획을, 투자감독관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다. 신청인은 또한 검

토 대상인 제안된 인수와 관련하여 장관에게 약정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러한 약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장관은 준수를 지시하는 법원명령이나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인정되는 그 밖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

6. 상기된 검토 대상이 아닌 캐나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비캐나다인은 투자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캐나다 회사의 총자산가치가 적용 가능한 기준액 이상인 경우, 투자감독관은 「캐나다 투자법」에 정의된 대로 한국 투자자에 의한 그 캐나다 회사의 “지배권 인수”를 검토할 것이다.

8. 제 13 항에 규정된 대로 계산된 더 높은 검토 기준은 문화산업분야의 인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제 8.45 조의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투자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인이거나 한국인이 지배하는 실체인 투자자만이 더 높은 검토 기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제 8 항에 명시된 분야 외의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캐나다 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11. 제 8.8 조(이행요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투자법」상 투자 인수 검토와 관련하여, 한국의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이행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기술·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양도인과 관계되는 캐나다 국내에 있는 국민이나 기업에게 양도하기 위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

12. 이 유보사항 제 11 항에 규정된 기술이전과 관련된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제외하고, 제 8.8 조(이행요건)는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에 적용된다. 제 8.8 조(이행요건)는, 캐나다에서의 생산의 입지, 연구·개발 수행, 근로자 고용 또는 훈련, 또는 특정 설비의 건설 또는 확장을 위하여,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검토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모든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한국 투자자를 위한 검토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기준액은 2014 년에 354 백만 캐나다 달러이다. 그 후 매년 1 월 장관이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그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연조정 =

$$\frac{\text{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text{시가기준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 \times \text{전년도 결정금액}$$

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가장 최근의 연속 4 분기 동안의 시가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의 평균을 의미한다.

시가기준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은 시가기준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해 전년의 상응하는 기간의 연속 4 분기 시가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의 평균을 의미한다.

상기에 언급된 목적 상, 금액은 가장 가까운 백만 달러로 반올림될 것이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유보내용 요소에 규정됨.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들에 의한 기업 또는 그들의 투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 그리고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자의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는 고위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이 유보의 목적상,

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점에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부과나 이 유보에 명시된 국적 요건을 부과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기존의 조치이다. 그리고

나. “공기업”은 캐나다 또는 주 또는 준주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지분을 통하여 통제하는 기업을 말하며, 기존의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이 협정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조치 캐나다 회사법, R.S.C. 1985, c. C-44
캐나다 회사규정, 2001, SOR/2001-512
캐나다 협동조합법, S.C. 1998, c.1
캐나다 협동조합규정, SOR/99-256

유보내용 투자

1. 회사는 연방 단위에서 설립된 회사 주식의 발행·양도 및 소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캐나다인의 소유 또는 지배가 면허, 허가, 보조금, 지급금 또는 그 밖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회사가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특정 법에 따른 캐나다인 소유권 또는 지배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캐나다인 소유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합의 없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고 공개시장에서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거나, 캐나다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인이 되거나, 금융 중개업자 및 캐나다인의 소유 또는 지배가 면허, 허가, 보조금, 지급금 및 그 밖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투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캐나다인 소유요건을 협동조합이 충족하도록 허락하기 위하여서, 협동조합의 투자주식이 캐나다 비거주자에게 발행되거나 양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을 「캐나다 협동조합법」은 규정한다. 투자지분의 소유나 지배가 협동조합이 캐나다인 소유권이나 지배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캐나다 협동조합법」은 소유 투자지분 수의 제한 또는 투자지분의 소유권의 금지를 규정한다.

3. 본 유보항목의 목적상, 캐나다인은 「캐나다 회사규정, 2001」이나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 정의된 “캐나다인”을 의미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캐나다 회사법, R.S.C. 1985, c. C-44
캐나다 회사규정, 2001, SOR/2001-512
캐나다 협동조합법, S.C. 1998, c.1
캐나다 협동조합규정, SOR/99-256
캐나다 법인법, R.S.C. 1970, c. C-32
특정회사 설립에 관한 의회특별법

유보내용 투자

1. 「캐나다 회사법」은 대부분의 연방 단위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이사의 25 퍼센트가 캐나다 거주자이고, 그런 회사의 이사가 4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의 이사가 캐나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분야의 회사의 경우 단 순 과반수의 캐나다 거주자 이사가 요구된다: 우라늄 광업, 서적출판 또는 유통, 서적판매가 회사 사업의 주요부분인 경우 서적판매, 그리고 영화 또는 영상 유통. 유사하게, 「의회법」이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최소 캐나다인 소유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는 과반수의 캐나다 거주자 이사를 보유하도록 요구된다.

2. 「캐나다 회사법」의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는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회사규정, 2001」에 규정된 등급에 속하는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정의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후 1년을 초과하여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를 제외한 개인을 의미한다.

3.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캐나다에서의 수익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총수익의 5 퍼센트 미만인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이사가 이사의 1/3 보다 많을 필요는 없다.

4. 「캐나다 협동조합법」에서는 이사의 2/3 이상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협동조합 이사의 최소 25 퍼센트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협동조합 이사가 3명에 불과한 경우, 최소 1 명의 이사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5. 「캐나다 협동조합법」의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개인과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으로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서 정의된다: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캐나다 협동조합규정」에서 규정된 등급에 속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정의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후 1 년을 초과하여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를 제외한 자

6. 「캐나다 법인법」 제 4 장에 따라, 특별법 상 회사의 선출 이사의 단순 과반수는 캐나다 거주자이고 영연방 국가 시민권자여야 한다. 본 요건은 「의회 특별법」에 의하여 1869 년 6 월 22 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합작주식회사에 적용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시민권법, R.S.C. 1985, c. C-29
외국인토지소유규정, SOR/79-416

유보내용 투자

1. 「외국인토지소유규정」은 「시민권법」 및 「농업 및 휴양용 토지소유법」, RSA 1980, c. A-9 에 따라 제정된다. 앨버타에서,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는, 합하여 최대 20 에이커를 포함하는 최대 2 필지로 구성되는 규제대상 토지에 대한 지분만을 보유할 수 있다.

2. 이 유보의 목적상,

자격이 없는 인은 다음의 인을 의미한다.

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연인

나.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기관, 또는

다. 캐나다가 아닌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

규제대상 토지는 앨버타주의 토지를 의미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앨버타 정부 토지

나. 도시, 읍, 신도시, 마을 또는 하계마을 내의 토지, 그리고

다. 광산 또는 광물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에어캐나다 공공참여법, R.S.C. 1985, c. 35(4th Supp.) 캐네디언 아스날스 유한책임회사 매각승인법, S.C. 1986, c. 20 엘도라도 뉴클리어 유한책임회사 구조조정 및 매각법, S.C. 1988, c. 41 노르디온 및 쉐라트로닉스 매각승인법, S.C. 1990, c. 4
유보내용	<p>투자</p> <p>1.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들”은 각 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특정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일부 회사의 경우 제한은 개별주주들에게 적용되며, 다른 회사의 경우 제한은 합하여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캐나다인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퍼센트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은 또한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제한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캐나다: 합하여 25퍼센트, • 카메코 유한책임회사(이전의 엘도라도 뉴클리어 유한책임회사): 비거주자 자연인 1명당 15퍼센트, 합하여 25퍼센트, • 노르디온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합하여 25퍼센트 • 쉐라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 합하여 49퍼센트, 그리고 • 캐네디언 아스날스 유한책임회사: 합하여 25퍼센트 <p>2. 이 유보의 목적상, “비거주자”는 다음을 포함한다.</p> <p>가. 캐나다 시민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p> <p>나. 캐나다 밖에서 설립되거나, 형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회사</p>

- 다. 외국의 정부 또는 정부의 정치적 하부기관 또는 외국 국가 또는 그러한 정부를 대신하여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받은 자
-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나 실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 마. 신탁,
 - 1) 과반수가 캐나다 거주자인 자연인의 이익을 위한 연금기금의 운영을 위한 신탁을 제외하고, 나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인 또는 실체에 의해 설립된 신탁, 또는
 - 2)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인 또는 실체가 실질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신탁, 그리고
- 바. 마호에 언급된 신탁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수출입허가법, R.S.C. 1985, c. E-1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통상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연인,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캐나다 지점만이 「수출입허가법」에 따른 통제를 조건으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허가 또는 통과 승인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관세사
산업분류	SIC 7794 관세사 CPC 749 기타 지원 및 보조 운송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9.2 조) 현지주재 (제 9.5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 8.7 조)
조치	관세법, R.S.C. 1985, c. 1 (2nd Supp.) 관세사면허규정, SOR/86-1067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캐나다에서 면허받은 관세사가 되기 위하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인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나. 회사는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이사 과반수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 파트너십은 캐나다 국민 또는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이사의 과반수가 캐나다 국민인 회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면세점
산업분류	SIC 65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소매점 (면세점에 한함) CPC 631, 632 (면세점에 한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 (제 9.5 조)
조치	관세법, R.S.C. 1985, c.1 (2nd Supp.) 면세점규정, SOR/86-1072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1. 캐나다 국경 통과 지역에서 면허받은 면세점 운영자가 되기 위하여, 자연인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캐나다 국민이어야 한다. 나.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다. 캐나다에 주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라. 면허 신청 연도 전년에 최소 183일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p>2. 캐나다 국경 통과 지역에서 면허받은 면세점 운영자가 되기 위하여, 회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캐나다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캐나다 국민이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문화재 수출입과 관련된 검사 서비스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CPC 96321 유적지 및 건물을 제외한 박물관 서비스(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CPC 8790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사업 서비스 (문화재 검사 서비스에 한함)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문화재 수출입법, R.S.C.1985, c. C-51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1. 캐나다 거주자나 캐나다에 있는 기관만이 「문화재 수출입법」 목적 상 문화재 전문검사자로 지정될 수 있다.</p> <p>2. 이 유보의 목적상,</p> <p>기관은 공적으로 소유되고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운영되며, 교육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대상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실체를 의미한다.</p> <p>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연인이나, 캐나다에 본사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무소를 캐나다에 유지하는 회사를 의미한다.</p>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특허대리인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특허대리점에 한함) CPC 8921 특허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특허법, R.S.C. 1985, c. P-4 특허규칙, SOR/96-4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수행이나 다른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특허대리인은 캐나다 거주자이고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분야	사업 서비스 산업
하위분야	상표대리인
산업분류	SIC 999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 (상표대리점에 한함) CPC 8922 상표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상표법, R.S.C. 1985, c.T-13 상표규정, SOR/96-195; SOR/2007-91, s.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상표청에서 상표출원 수행이나 다른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상표대리인은 캐나다 거주자이고 상표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조치	캐나다 석유자원법, R.S.C. 1985, c.36 (2nd Supp.) 영토토지법, R.S.C. 1985, c.T-7 연방부동산법, S.C. 1991, c.50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 석유자원협약 실행법, S.C. 1988, c.28
유보내용	<p>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유보는 적용 가능한 조치에 정의된 대로 “국경 지대” 및 “연안지역” (주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발급되는 생산면허에 적용된다. 2. 석유 및 가스 생산면허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인은 캐나다에서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이행요건(제 8.8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p>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 S.C. 1992, c.35 에 의해 개정된 바에 따라,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생산 및 보존법, R.S.C. 1985, c. O-7</p> <p>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 석유자원협약 실행법, S.C. 1988, c. 28</p> <p>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p> <p>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법, 1998, c.5, s.20 및 석유 및 가스법, RSY 2002, c.162 를 포함하여, 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조치</p> <p>구 노스웨스트 준주의 승계 준주로서 누나부트에 적용되거나 그에 의해 채택된 실행조치를 포함하여, 노스웨스트 준주 석유 및 가스협약 실행조치</p> <p>캐나다-퀘벡 세인트로렌스만 석유자원협약 실행조치</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p> <p>1.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따라, “복지계획”은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업을 이행하도록 승인받기 위하여 장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p> <p>2. “복지계획”은 캐나다인의 고용 및 경쟁을 통하여 복지계획에 기재된 제안 업무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평한 기회를 캐나다 제조사, 컨설턴트, 계약자 및 서비스회사에 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p> <p>3.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의해 고려되는 복지계획은, 혜택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가 훈련 및 취</p>

업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갖거나 복지계획에 언급된 제안 업무에 사용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장관이 신청자에게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4.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규정된 내용에 계속되는 규정은 「캐나다-유콘 석유 및 가스 협약」을 실행하는 법에 포함된다.

5.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규정된 내용에 계속되는 규정은 「노스웨스트 준주 석유 및 가스협약」 그리고 「캐나다-퀘벡 세인트로렌스만 석유자원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법이나 규정에 포함될 것이다. 이 유보의 목적상, 이러한 협약들은 일단 체결되면 기존의 조치인 것으로 간주된다.

6.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안석유자원협약 실행법」 및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은 복지계획에 대하여 동일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복지계획이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가. 계획을 제출하는 회사나 기타 기구는, 연안 지역에서 업무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주에 적절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사무소를 설립한다.

나. 주에서 이행될 연구·개발 및 주에서 제공될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지출을 한다.

다. 주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정시가, 품질, 납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 이러한 법에 따라 복지계획을 운영하는 이사회는, 혜택 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이 소유하는 회사나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복지계획에 언급된 제안 업무나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복지계획에 포함되도록 또한 요구할 수 있다.

8. 또한, 캐나다는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개발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캐나다인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

의 재산권적 지식의 이전을 위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석유 및 가스
산업분류	SIC 071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이행요건(제 8.8 조)
조치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 S.C. 1987, c.3 하이버니아 개발사업법, S.C. 1990, c.41
유보내용	<p>투자</p> <p>1. 「하이버니아 개발사업법」에 따라, 캐나다와 하이버니아 사업소유주들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사업소유주가 캐나다 및 뉴펀들랜드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계획”의 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및 뉴펀들랜드의 특정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복지계획”은 부속서 I의 캐나다 유보목록, I-CA-19 쪽부터 21쪽까지에 자세히 설명된다.</p> <p>2. 또한, 캐나다는 하이버니아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캐나다 국민이나 기업에게 이전하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집행할 수 있다.</p>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우라늄
산업분류	SIC 0616 우라늄광산 CPC 883 광업 부수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조치	캐나다 투자법, R.S.C. 1985, c.28 (1st Supp.) 캐나다 투자규정, SOR/85-611 우라늄 광업분야 비거주자 소유권 정책, 1987
유보내용	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캐나다 투자법」에 정의된 대로 “비캐나다인”의 우라늄광업권 소유권은 최초생산단계에서 49퍼센트로 제한된다. 광업권이 「캐나다 투자법」에서 정의된대로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2. 총독의 승인을 조건으로, 광업권 소유에 있어서 캐나다인 참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정책으로부터의 면제가 허용된다. 1987년 12월 23일 전에 이행되고, 허용된 소유권 수준을 초과한, 비캐나다인에 의한 광업권에 대한 투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비캐나다인에 의한 소유권의 증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전문직, 기술 및 특화 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2 감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은행법, S.C. 1991, c.46 보험회사법, S.C. 1991, c.47 신용협동조합법, S.C. 1991, c.48 신탁 및 대부회사법, S.C. 1991, c.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은행은 은행의 감사로 회계 법인을 선정하도록 요구된다. 회계 법인은 「은행법」에 규정된 대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요구되는 자격조건 중에는, 법인의 2명 이상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과, 법인과 은행에 의해 감사를 수행하도록 공동으로 지명된 법인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이 포함된다.

2.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및 신탁 또는 대부회사는 자연인이거나 회계 법인인 감사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관의 감사인은 「보험회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신탁 및 대부회사법」에 규정된 대로, 각 경우에 맞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인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감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요구되는 자격 중에는, 감사인으로 임명된 인이 캐나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할 것이 있다. 회계 법인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감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법인과 금융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법인의 구성원은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 73 항공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아래 유보내용 에 규정된 대로, 특수항공서비스 CPC 7512 쿠리어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3 조)
조치	캐나다 운송법, S.C. 1996, c.10 항공법, R.S.C. 1985, c. A-2 캐나다 항공규정, SOR/96-433: 제 2 장, 제 2 부 “항공기 표시 및 등록” 제 4 장 “직원 면허 및 훈련”, 그리고 제 7 장 “상업 항공서비스”
유보내용	투자

「캐나다 항공법」은 제 55 절에서 “캐나다인” 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한다.

“... ‘캐나다인’ 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의 의미 내 영주권자, 캐나다 정부 또는 그러한 정부의 대리인, 또는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되며, 최소 75 퍼센트 또는 총독이 규정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그보다 적은 퍼센티지의 의결권있는 지분이 캐나다인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되는 회사나 그 밖의 실체를 의미한다...”

「항공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은 「캐나다 운송법」에 따른 “캐나다인”의 정의를 참조방식에 의하여 통합한다. 이러한 규정은 상업 항공서비스의 캐나다인 운영자가 캐나다 등록 항공기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정은 캐나다 항공 운영자 증명서를 취득하고 “캐나다의” 항공기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운영자가 캐나다인일 것을 요구한다.

“캐나다인” 만이 다음과 같은 상업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가. “국내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들 간 또는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

는, 또는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에 있지 아니한 지점 간의, 항공서비스)

나. 기존의 또는 미래의 항공서비스협정에 따라 정기 국제서비스가 캐나다 항공사에게 유보된 경우, “정기 국제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 내의 지점 간의 정기 항공서비스)

다. 「캐나다 운송법」에 따라 부정기 국제서비스가 캐나다 항공사에게 유보된 경우, “부정기 국제서비스”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과 다른 국가의 영토 내의 지점 간의 부정기 항공서비스)

라. “특수항공서비스” (항공지도제작, 항공측량, 항공촬영, 산불관리, 화재진압, 항공광고,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항공 순찰, 항공 관측, 비행 훈련, 항공 관광 및 항공작물살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외국인은 캐나다 등록 항공기의 등록된 소유주가 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캐나다 항공규정」에 추가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나 캐나다인 소유권 및 지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는 항공기 사용의 상당 과반수(최소 60 퍼센트)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적인 용도의 항공기만을 등록할 수 있다.

「캐나다 항공규정」은 또한 “비캐나다인”인 회사에 등록된 외국 등록 민간항공기가 12 개월 기간 동안 최대 90 일만 캐나다에 위치하도록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외국 등록 민간 항공기는, 민간운항증명서를 요구하는 캐나다 등록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용도로 제한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운송
산업분류	CPC 에 정의되지 않음. 제 9.12 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항공법, R.S.C. 1985, c. A-2 캐나다 항공규정, SOR/96-433 제 4 장 “직원 면허 및 훈련” 제 5 장 “내공성” 제 6 장 “일반 운항 및 비행 규칙” , 그리고 제 7 장 “상업항공서비스”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등록 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제품의 내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항공기 및 그 밖의 항공제품의 수리, 정비 또는 유지보수 활동은 캐나다 항공규제요건을 충족하는 인(즉, 승인된 유지보수 조직 및 항공기 유지보수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승인된 유지보수 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캐나다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 외부에 위치한 인에게는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육상운송
산업분류	SIC 456 트럭운송산업 SIC 4572 도시간 및 지방 운송시스템산업 SIC 4573 통학버스 운영산업 SIC 4574 전세 및 관광버스 서비스산업 CPC 7121 철도를 제외한 그 밖의 정기육상여객운송 CPC 7122 철도를 제외한 그 밖의 부정기육상여객운송 CPC 7123 철도를 제외한 육상화물운송 CPC 7512 쿠리어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S.C. 2001, c. 13 에 의해 개정된 자동차 운송법, R.S.C. 1985, c.29 (3rd Supp.), 캐나다 운송법, S.C. 1996, c. 10 관세, 1997, c. 3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에 등록된 그리고 캐나다에서 제조되거나 관세가 납부된 트럭 또는 버스를 사용하는 캐나다인만이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 간 트럭 또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 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SIC 4549 기타 수상운송산업 SIC 4553 해양구난사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여객 및 화물)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 그 밖에 선박에서 이행되는 상업해양활동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캐나다 해운법, 2001, S.C. 2001, c. 2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캐나다에서 선박을 등록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소유자나 해당 선박을 독점 점유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조제1항의 의미 내의 영주권자 나.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다. 선박이 이미 다른 국가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가 활동 중인 경우,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회사

- 2)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지점의 캐나다내의 직원이나 이사, 또는
- 3)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관리회사

2. 용선주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선체용선된 외국에서 등록된 선박은 선박의 등록이 등록국에서 정지된 동안은 임차기간동안 캐나다에 등록될 수 있다.

- 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된 영주권자, 또는
- 나.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SIC 4549 그 밖의 수상운송산업 SIC 4553 해양구난산업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SIC 4559 그 밖의 수상운송 부수서비스 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45 수상운송 지원서비스 CPC 5133/5223 수로, 항구, 댐 건설 및 그 밖의 수상공사 그 밖에 선박에서 이행되는 상업해양활동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캐나다해운법, 2001, S.C. 2001, c. 26 해상인사규정, SOR/2007-1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선장, 항해사, 기술자, 그 밖의 특정 선원은 캐나다 등록 선박에서 근무하기 위한 요건으로 운송부 장관이 부여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54 수로안내서비스, 수상운송산업 CPC 74520 수로안내 및 선박접안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9.2 조)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수로안내법, R.S.C. 1985, c. P-14 일반 수로안내규정, SOR/2000-132 대서양수로관리국규정, C.R.C., c. 1264 로렌시아 수로관리국규정, C.R.C., c. 1268 오대호 수로안내규정, C.R.C., c. 1266 태평양 수로안내규정, C.R.C., c. 127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부속서 II 의 유보목록, II-CA-11 쪽을 조건으로, 캐나다 영토의 의무수로안내수역에서 수로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관련지역 수로관리국에서 발행하는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가 요구된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이 이러한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도선사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를 발급받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를 수령한 날부터 5 년 내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 수상운송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유보유형	현지주재(제 9.5 조)
조치	해운동맹면제법, 1987, R.S.C. 1985, c. 17(3rd Supp.)
유보내용	<p>국경 간 서비스무역</p> <p>해운동맹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영업하는 캐나다 지역에 공동으로 사무소나 대리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운동맹은 운송인들이 수상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요금과 조건을 규제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해양운송인들의 조합이다.</p>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산업분류	SIC 4541 화물 및 여객 수상운송산업 SIC 4542 페리산업 SIC 4543 해양예인산업 CPC 721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CPC 722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
유보유형	최혜국 대우(제 9.3 조)
조치	연안무역법, S.C. 1992, c.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캐나다 부속서 II 의 유보목록, II-CA-9 쪽에서 10 쪽까지에 규정된 「연안무역법」에 따른 금지는, 미국정부가 소유하는 상품을 캐나다 영토에서 원거리조기경보지점으로 공급하기 위한 운송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미국정부가 소유한 선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통신
하위분야	통신운송망 및 서비스 무선통신
산업분류	CPC 752 통신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조치	통신법, S.C. 1993, c. 38 캐나다 통신사업자 소유권 및 지배규정, SOR/94-667 무선통신법, R.S.C., 1985, c. R-2 무선통신규정, SOR/96-484
유보내용	<p>투자</p> <p>1. 캐나다는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다만, 캐나다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20 퍼센트의 직접투자와 33.3 퍼센트의 간접투자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를 의결권 있는 지분의 누적합계 46.7 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실제 캐나다인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p> <p style="padding-left: 40px;">다. 기간통신사업자 이사회는 최소 80 퍼센트가 캐나다인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p> <p>2. 다음의 예외는 이 유보에 적용된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국제해저케이블면허에 따라 영업하는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 까지 허용된다.</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캐나다인 서비스공급자는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무선위성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p>

- 다.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고정위성시스템은 캐나다 내 지점과 캐나다 외부의 모든 지점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 라. 위성승인에 따라 영업하는 공급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 마. 캐나다에서의 통신서비스공급으로부터의 소득(계열사로부터의 소득 포함)이 캐나다에서의 통신서비스 연간수입 총액의 10 퍼센트 미만에 해당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00 퍼센트까지 허용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제 8.3 조 및 제 9.2 조) 최혜국 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현지주재(제 9.5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 8.7 조) 이행요건(제 8.8 조)
조치	모든 주 및 준주의 모든 기존 비합치조치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투명성만의 목적상, 부록 I-가는 지역정부수준에서 유지되는 비합치조치의 예시적, 비구속적 목록을 규정한다.

부록 I-가
캐나다의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목록¹

분야	관할권별 비합치 조치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p><u>거주</u>: 서스캐처원,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매니토바, 앨버타</p> <p><u>현지주재</u>: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매니토바, 온타리오</p>
건축설계서비스	<p><u>거주</u>: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p> <p><u>회사형태</u>: 프린스 에드워드섬은 비거주자 회사에게 파트너십에서 종사자의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p>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p><u>거주</u>: 서스캐처원,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앨버타</p>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p><u>거주</u>: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서스캐처원</p>
부동산 서비스	<p><u>거주</u>: 앨버타, 퀘벡, 유콘, 매니토바, 브리티쉬 콜롬비아,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p> <p><u>현지주재</u>: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 앨버타</p>
경영컨설팅서비스	<p><u>거주</u>: 뉴펀들랜드앤라브라도</p>
톨 리파이닝(Toll refining)	<p><u>이행요건</u>: 온타리오는 비(卑)금속이 캐나다에서 처리 또는 정련될 것을 요구한다.</p>
직업소개 및 파견 서비스	<p><u>현지주재</u>: 온타리오</p>

¹ 본 문서는 투명성만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속력이 있는 목록은 아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출처는 캐나다의 2005년 5월 서비스 수정 조건 제안(TN/S/O/CAN/Rev.1, 12 May 2005)이다.

조사 및 경비 서비스	<p><u>고위경영진 및 이사회</u>: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p> <p><u>현지주재</u>: 온타리오</p>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p><u>거주</u>: 온타리오, 브리티쉬 콜롬비아,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p> <p><u>시민권</u>: 브리티쉬 콜롬비아, 매니토바</p> <p><u>현지주재</u>: 서스캐처원</p> <p><u>훈련요건</u>: 온타리오는 토지측량사의 경우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을 주 내에서 완료하도록 요구한다.</p>
그 밖의 사업 서비스	<p><u>거주</u>: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노바스코샤</p> <p><u>현지주재</u>: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섬</p>
유통 서비스	<p><u>시민권</u>: 퀘벡.</p> <p><u>현지주재</u>: 퀘벡,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노바스코샤,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p> <p><u>경제적 수요 심사</u>: 프린스 에드워드섬</p>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p><u>거주</u>: 앨버타, 브리티쉬 콜롬비아, 온타리오</p> <p><u>거주/시민권</u>: 앨버타,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퀘벡</p> <p><u>현지주재</u>: 온타리오, 퀘벡</p> <p><u>조세</u>: 온타리오는 비거주자가 20 퍼센트의 토지양도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한다.</p>
도로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p><u>경제적 수요 심사</u>: 브리티쉬 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누나부트, 노스</p>

	웨스트 준주
도로운송서비스 (화물운송)	<u>현지주재</u> : 퀘벡 <u>경제적 수요 심사</u> :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앤 래브라도